

한국체육정책학회지, 2020. 8, 제18권, 제3호, pp. 113~127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2020. 8, Vol. 18, No. 3, pp. 113~127

## 코로나19 사태와 체육시설 정책·제도 현안 분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김헌일\* (청주대학교 교수)

### I. 서론

스포츠산업은 적절한 장소와 입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 공간·입지 중시형 산업(문화체육관광부, 2017)이라 할 만큼 시설업의 산업 기반 기여 수준이 높다. 실제 정부는 스포츠산업을 시설업, 용품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분류(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체육관광부, 2017)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산업 진흥 및 운영과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시장 적용 관련 정책과 더불어 활동공간, 즉 시설의 효율적 정책 마련과 집행의 중요성은 최근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서도 잘 드러난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이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스포츠 본질적 특성은 물론 스포츠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스포츠 시설과 그 관리 운영에 관한 정책과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스포츠산업은 물론 파생 산업 분야에까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메가 스포츠 이벤트로

국가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었던(김헌일, 2020) 대한민국 산업에 있어서 스포츠 시설의 국정 영향 수준을 고려한다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정책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스포츠나 신체 여가활동은, 그 특성상 공간 기반의 영역이기에 거리나, 도로, 농장, 숙박시설같이 직접적인 신체활동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스포츠 등과 관련된 것이라면, 신체활동을 위한 다양한 모든 시설의 공급, 운영관리, 자원 관리 등에 관한 정책과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Veal, 2010).

2019년 12월경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COVID-19)를 WHO(2020)는 지난 3월 11일 판데믹(Pandemic)으로 공식 선언하였으며, 발생 7개월 만인 7월 21일 현재 216개국에서 140,348,858명 확진판정, 603,691명 사망했으며, WHO가 1월 21일 이후 7월 20일까지 182번째 보고서를 발표할 만큼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스포츠 분야는 관광, 항공 등과 더불어 그 충격이 가장 빠르고, 크게 나타난 분야 중 하나다. 글로벌 프로 스포츠 시장의 두

핵심어: 체육시설정책, 체육시설법, 스포츠산업정책  
\* e-mail: skihufs@gmail.com

2020)의 프로 스포츠 경기와 전 세계 곳곳의 스포츠 이벤트(CNN, 2020; BBC, 2020) 대부분이 취소 및 잠정 중단되었으며, 스포츠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혔다(WSJ, 2020). 대한민국스포츠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코로나19 초기 일부 체육시설의 확산 사례는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다(MBC, 2020; 스포츠 서울, 2020).

현재 국내 제도상 스포츠 시설 정책과 제도는 그 관련 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특히 제 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조항은 그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줌바댄스교습소(연합뉴스, 2020), 탁구장(경향신문, 2020)에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 관련 시설은 사실상 가장 강력한 수준의 강제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인천일보, 2020; KBS, 2020; YTN, 2020). 매출 급감으로 인한 업장 폐업이 속출했으며, 종사자들의 대거 실직 상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5.28 대책’(문화체육관광부, 2020) 등을 내놓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각각의 지원책을 마련하였지만, 제한적인 금융지원, 소비자 중심 지원이었으며, 직접적인 지원도 매우 제한적이고, 금액도 현장 피해를 복구하는 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피해 관련 체육시설들을 지원하려 해도 지원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 10조에 명시된 ‘체육시설의 구분·종류’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양천구 탁구장 등 일부 시설에서 코로나19의 방역이

실패한 원인 또한 고위험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 놓인(뉴시스, 2020) 경우로, 이 역시 체육시설법상 구분에 근거 방역 행정관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다. 공공사업은 물론 민간 비즈니스의 영역에서도, 체육시설이 경제적 이익 창출은 물론, 시민사회발전 등을 유발하는 다양한 공익성을 고려할 때 체육시설에 관한 미래 지향적 공공 정책 제시는 정부의 중요 과제다(Santo, 2009). 따라서, 현 상황처럼 시민안전은 물론 사회의 요구와 발전을 저해하는 체육시설 정책과 제도 변화가 긴급히 요구된다.

연구자는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는 체육시설법 제 10조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학문 분야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과제라 생각하였다. 이에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정책과 제도의 한계는 물론, 체육시설법 제 10조 관련하여 그동안 사회 곳곳에서 나타난 여러 분쟁과 문제를 다양한 각도와 사례를 통해 재확인하고, 정책·제도적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개정 방향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II. 연구방법

체육시설법 제 10조와 관련한 문제를 그동안 학계에서 다룬 것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일부 선행 연구 정도에 불과하다. 사회적 갈등이 법적 갈등으로 확대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의 경우다. 그렇기에 법적 분쟁이나, 집단행동 등이 없는 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어렵다. 즉,

그 양적 데이터를 축적하기 어려움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의 법적 불합리성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행정민원의 정확한 데이터는 정부조차 자료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담당 공무원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체육시설법의 문제점을 가시화한 결정적 사태인 코로나19는 최근 7개월 사이 발생한 긴박한 재난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전 세계 각 국가의 재난 콘트롤 시스템과 국제기구조차 통제 불가능한 상태이며, 사실상 확진자와 확진 판정지수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양적 데이터 확보를 미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양적 연구의 수행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 시기 기준 현재까지, 코로나 19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사례는 물론, 체육시설법 제10조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구분·종류와 연관된 과거의 다양한 문제 사례(Case Study)를 탐색 및 분석하였다. 또한, 전통적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면담법(Interview)을 활용하였는데, 체육시설 영세소상공 사업자, 대기업 경영 체육시설업 실무자, 체육시설 관련 민간단체 사무처 실무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앙정부 관련부처 공무원, 법조계의 체육시설 관련 소송 등 유경험 전문 변호사까지 총 10명으로부터 수집한 인터뷰 내용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인터뷰는 2020년 3월 21일 ~ 6월 9일까지 진행 하였으며, 대면 인터뷰를 원칙으로 자료수집을 수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인터뷰를 기피 한 3인의 경우 전화 등을 활용

표 1.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소 속	직급	연령	성별
A휘트니스	대표	30대	남성
B휘트니스	대표	30대	남성
K줄바덴스학원	대표	40대	여성
P스키장 마케팅부서	과장	40대	남성
OO 체육시설 민간협의체	사무부장	40대	남성
K시 체육 시설 담당부서	과장	50대	남성
C시 체육 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40대	남성
중앙정부 체육 시설 관련 S부처	사무관	40대	남성
중앙정부 체육담당 부처	사무관	40대	남성
법무법인OO	변호사	40대	여성

하여 직·간접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최초 연구설계에서 심층 면접(In-depth) 인터뷰를 계획하였으나, 대면 인터뷰를 기피 한 3인의 경우는 사실상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 체육시설 정책 및 제도와 관련한 분쟁 등 사례에 관한 선행 연구와 이론서를 참고(Literature review)하여 문제의 원인을 최종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체육시설 정책 및 제도에 있어 시급한 현안과 미래 지향적인 정책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 III. 본론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 10조의 구분·종류

체육시설법은 그 제 1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 구성은 제1장의 총칙, 제2장의 공공 체육시설, 제3장의 체육시설업, 그리고 제4장과 제5장의 보칙과 벌칙으로 구성

되어있다. 이 법은 최초 제정 후 1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최근 2020년 4월 30일 일부 개정이 국회에서 또 한차례 이루어졌다(연합뉴스, 2020).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조항인 제 10조는 이번 2020년 4월 30일 국회 일부개정에 포함되었으며, 2020년 5월 19일부터 개정 공포되었다. 그 법문은 <그림 1>과 같다.

그러나, 체육시설법 제 10조의 구분이 사회 현실성에 맞지 않고, 다양한 분쟁의 원인이 되어 제 1조에 명시한 법의 목적에 배치될 뿐 아니라 진흥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이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강종진(2017), 김현일(2019), 이경운(2016), 남기연, 김대희(2018), 신동찬(2015), 신호영, 정철화(2020) 등은 체육시설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결국 체육시설법상 구분·종류의 구조적 한계가 주요 원인이었음을 제기한 바 있다.

강종진(2017)은 체육시설의 구분이 각 시설의 특징과 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이에 적절한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관리는 물론, 사고 발생 이후 조치 및

사후처리의 한계 원인이 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경운(2016)은 체육시설법의 구분 기준이 유사 법인 관광진흥법, 주택법 등과 비교하여 불분명하고, 근거법에 따라 수단이 달라지고 있어 현장에서의 갈등과 문제 발생 여지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남기연, 김대희(2018)는 체육시설법상 구분·종류가 비현실적인 부분을 소송사례를 들어 접근하였는데, 체육시설업 신고 시설인 체력단련장의 샤워 시설에 '목욕업' 대상의 공중위생법 등을 적용하여 추가 규제하고 있는 제도적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다.

## 2. 코로나19에서 드러난 체육시설법의 한계 사례

코로나19 초기부터 실내체육시설은 줌바댄스 교습소(연합뉴스, 2020)와 양천구 탁구장(경향신문, 2020) 사례로 인하여 감염위험 시설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들 시설에 관한 법·제도적 적용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다. 줌바댄스교습소의 경우 상황 발생 당시까지 '체육시설법상' 신고 시설, '학원법'상 무도학원, '문화예술진흥법'상

<b>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체육시설법)</b>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9. 18., 2020. 5. 19.>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u>체육교습업(2020.4.30. 개정에 추가)</u>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일 : 2020. 11. 20.] 제10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그림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10조

문화시설 등 그 적용의 기준조차 각기 상이하  
여 행정상 일관성이 불가능한 시설이었다. 양천  
구 탁구장도(경향신문, 2020) 중앙재난대책위  
원회가 발표(KBS, 2020)했던 ‘고강도 위험시설’  
에서 예외였는데, 그 원인은 체육시설법상 ‘자  
유업’으로 분류되어 담당 행정기관의 행정관리  
와 안전방역 관리 적용 기준이 불분명했음에  
기인한 것을 원인으로 들었다(중앙일보, 2020).

한편, e-sports는 최근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중 하나다. PWC(2018)은 글로벌 스포츠산업 분석에서 4대 키워드로 e-sports 사업 분야를 제시하였고, Nielsen Sports(2018) 역시 글로벌 스포츠산업 5대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이번 코로나 19를 통해 가장 급성장의 기회를 얻게 된 분야로 e-sports를 선정하는 해외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Advanced-television, 2020). 특히, 프로스포츠 중단으로 인한 대체 상품으로 e-sports의 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중계 권료 상승마저 이어지고 있다(BroadcastPro,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e-sport 시설인 PC방 등은 체육시설법 제 2조(정의) 1호에서 명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1호에 따라 체육시설에서 제외함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e-sport 시설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 행정관리 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하여, 코로나 19에서 나타나듯, 방역은 물론 체육시설로서의 행정관리와 조치를 시행함에 한계가 있고, 산업적 가치로서의 유기적 산업 진흥에도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체육시설법상 제10조 구분·종류에 포함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제2조에서 예외 사업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다양한 문제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초기, 다중이용시설로 지목된

헬스장, 댄스장 등 지역 영세소상공인이 경영하  
는 체육시설은 각 지자체의 강력한 권고로 장  
기간 운영중단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자본 상  
태 등 경영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골목 체육  
시설업 경영자는 물론, 해당 업체 종사자, 특히  
비정규직 경우에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고,  
급기야 잇단 폐업 속출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  
해로까지 이어지고 말았다(뉴스1, 2020; KBS,  
2020; YTN, 2020). 정부 파악 실태 보고에서 3  
월 이후 체력단련장 91.3% 매출 감소, 체육도장  
81% 매출 감소가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다음은 휘트니스라 불리는 ‘체력단련장’  
업 영세소상공 2명과, 줌바댄스학원이라 불리는  
댄스교습소 영세소상공 1명의 관련 증언이다.

휘트니스 소상공 A씨: 2월부터 구청 담당자  
들이 여러 번 와서 사업장 시설의 방역과 운영  
지침을 알렸습니다. 말이 방역이지 소규모 영세  
업자들이 시행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였고, 코  
로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사실상 시설 폐쇄를 요  
구하였습니다. 공무원들하고 몇 번 다투기도 했  
습니다. 3주 넘게 문 닫은 후 영업이 거의 망가  
져서 임대료조차 못 내는 상황이 벌써 4달째 이  
어지고 있는데, 운영중단 권고 기간에 운영중단  
지시 잘 따랐다고 겨우 5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체육시설법상 ‘체력단련장’ 신고 사업장.

휘트니스 소상공 B씨: 코로나 19가 벌어지고  
나서 휘트니스장을 한동안 문 닫고 나니까 회원  
들이 확 줄었습니다. 강사들 월급도 못 줘 대부  
분 떠났습니다. 정부하고, 시청에서 안내한 금융  
지원을 받으려고 알아봤는데, 우리 같은 업자들  
은 대부분 지원 대상도 아니고, 지원 조건과 금  
액도 맞질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체육시설법상  
‘체력단련장’ 신고 사업장.

쑤바덴스학원장 K씨: 천안 코로나 발생 즈음 여론 의식해 2개월간 자체 운영 중단하였습니다. 사실상 최고 성수기인 봄 시즌 영업을 못했고, 강사들은 모두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세도 못 내는 학원이 대부분입니다. 강사들은 이것저것 지원금으로 100만원 넘게 받았다는데, 저희는 휴업 보상금, 소상공 지원금 모두 합쳐 9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시청 체육 관련 부서에서 매주 지도는 나오는데, 정작 지원금은 체육 관련 지원금이 아닌 경제정책 관련 부서에서 신청해 받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청 직원들이 쑤바덴스학원은 '체육시설'이 아니라서 경제 관련 부서 담당 시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처음 구청에 허가받으려 갔을 때, 관련 법상 체육시설이나, 학원시설로는 영업 허가를 못 해준다며, 음식점처럼 서비스업으로 허가해주었습니다. 세무서에서조차 저희는 체육시설 아니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청에서 괴로울 정도로 점검 나오면서 체육시설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동네 아파트단지 체육시설이나, 공공 체육시설하고 우리 같은 민간시설을 행정 지도 수준이 제각각이고, 우리만 더 피해 보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슨 시설인가요? 쑤바덴스학원: 서비스업 사업장.

이러한 피해는 대형 체육시설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스키장의 경우 연중 극성수기인 1월 중순 무렵에 코로나19 발생 시기하여 그 경영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했는데, 경기도 소재 A스키장의 경우 2월 매출 감소 73.2%, 강원 서북부 소재 B스키장의 경우 이용객 감소 64.3%, 그리고 강원도 평창 소재 C스키장의 경우 2월 단체 취소율이 100%에 달했다(한국스키장경영협회, 2020). 이와 관련하여 스키장경영 실무자 1명, 그리고 스키장경영 민간단체 사무직원 1명은 다음과

같이 상황을 증언하였다.

스키장 경영 실무자 P씨: 코로나 19 발생 직후인 설 연휴 즈음부터 방역 안전관리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현장 점검도 진행되었고, 사실상 2월부터 영업 포기 상태에 놓였습니다. 저희 리조트 위탁업체 소속인 객실 청소 담당 어르신들은 90% 이상 해고 상태입니다. 식자재 공급 업체들도 도산상태에 놓였다고 하고, 스키장 주변 상가도 초도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무슨 지원이라고 해서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스키장은 콘도 같은 숙박업이 주 수입원인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업이기 때문에 숙박업종과 관광업에 시행된 지원을 받아 본적도, 지원해준다는 소식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체육 시설법상 '스키장' 등록 사업장.

스키장경영 기업 협의회 사무직원 J씨: 스키장은 그동안 대기업이 운영하는 사치 시설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전기피크제, 대부료 등에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성수기 절반을 영업하지 못했는데, 지원은커녕, 기존의 과도한 과세조차 긴급조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부 부처를 돌아다녀 봐도 늘 복잡한 여러 관련 법이 엉켜 있어 단일 부처나 기관에서는 지원이나 해결 불가하다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얘기를 들으면 결국 체육시설법에서 '등록시설'로 분류된 시설이고, 대기업 경영자산이라 여론을 의식 안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공통된 결론이었습니다.

영세 소상공은 물론, 스키장 사례에서 나타났듯, 사실상 시설 강제 운영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재 긴급히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구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3.18 대책'(기획재정부, 2020), '4.1 대책'(위기관리대책위원회,

2020), '5.28 대책'(문화체육관광부, 2020)에서 관련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매출 규모, 시설 규모 기준으로 제시한 용자 지원 등은 무용지물이었으며, 소비자 중심의 지원도 피해 규모 대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수준이었다. 위의 증언과 같이, 스키장 같은 대형 민간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법 제10조상 구분이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관광, 숙박업에 시행된 긴급 지원의 사각 지대에 있었으며, 대기업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이유로 항공업, 면세점 등에도 시행된 지원에서 정부 지원 배제라는 역차별이 발생 하였다.

앞서 양천구 탁구장 사례와 스키장 사례는 체육시설법의 구분·종류가, 그리고 줌바댄스학원 사례는 시설의 구분은 물론 규정 범위가 행정 공백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유사 체육시설 분류 방식이나, 체육시설법상 구분과 이를 근거로 한 행정기관 관리체계상의 데이터에 의존한 행정 관리 및 방역, 그리고 시설 점검 및 행정 지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체육시설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하기에 법·제도상 한계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지방 C시 시청 공무원 K씨: 이번 코로나19 때 이것저것 관리도 해야 하고, 지원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엔 똑같은 업종인데 어디는 체육시설로, 어디는 문화시설로, 또 학원시설로 중구난방 잡혀 있어서 솔직히 저희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지방 C시 시청 공무원 M씨: 이번에 저희가 고용 지원을 하려고 대상자들 신청도 받고, 관련 자료를 검토도 해봤는데, 이분들 직업이나 종사 업종을 구분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한둘이 아니

라 합니다. 사업장들도 마찬가지로 상황입니다.

중앙부처 A청 공무원 M씨 : 해당 시설 지원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 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랑 관련 법들이 뒤엉켜 있어 지원해드리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선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서 관련법(체육시설법)을 뜻함) 일부개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 C부 공무원 S씨 :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등록시설'로 분류된 현행법상 저희가 지원이나 과제 부분을 해결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스키장 시설은 대기업 운영 시설이라 저희가 함부로 지원을 얘기했다가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어 쉽지 않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법률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통해 법률 개정 요청을 해주세요.

### 3. 체육시설법상 법적 분쟁 사례 선행 연구 및 행정제약 사례

운동 종목과 형태 중심으로 시설을 구분하고 있는 체육시설법의 구조상, 그 구체적인 여러 조항은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 10조의 구분·종류의 기준에 근거하여 적용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쟁과 행정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남기연, 김대희(2018)는 체육시설법 제10조에서 '신고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체력단련장업', 즉 최근 사회에서 헬스장, 휘트니스장 등의 명칭으로 영업 중인 사업장의, 법적 분쟁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헬스장 등에서 운동 후 추가 편의 제공을 위한 목욕·샤우나 시설의 설치 및 제공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에 의해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하는가? 아

니면, 체육시설업의 부분 편의시설로서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이들 두 법률 모두 규정을 동시에 따라야 하는가의 법적 분쟁과 판결을 다루었다. 이들은 체육시설법 등 법이 오늘날의 체력단련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체육시설법에서 사회 현실상 확대되어가고 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추가로 포함해야 하며,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안전 및 위생관리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 종류 시설에 대해서 법적 적용의 잣대가 이중적으로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어긋나거나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행정 불편과 분쟁을 법적 차원에서 규정지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체육시설법 제 10조에서 골프장은 스키장, 자동차 경주업 등과 함께 가장 강력한 규제 관리 대상인 '등록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등록시설'의 구분에 해당하여 그 해석상 견해 차이로 인해 발생한 법적 분쟁 사례를 연구한 이경운(2016)은 체육시설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한 행정 절차와 과정, 그리고 그 결과 통보 등에 있어 신고와 허가, 등록 승인 등이 다른 유사 법령과 비교하여 부적절한 부분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지속적인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 체육시설법상 행정 현장에서의 해결과 법원의 분쟁 해결 여지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한 근본적 차원에서 입법기관의 체육시설법 개정 필요를 제시하였다.

신호영, 정철화(2020) 역시 '등록시설'인 골프장 관련 법정 분쟁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체육시설법상 구분과 그에 따른 조세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다룬 것으로 양도세, 법인

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법적 분쟁의 원인이 여전히 사회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체육시설법, 그리고 체육시설법상 시설 구분의 불분명함과 그로 인한 행정 집행 현장에서의 자의적 해석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주장하였다. 신호영(2020) 역시 동일 주제와 판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육시설법에 '위헌성'이 존재함을 제기하였다.

신동찬(2015)은 체육시설 여부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댄스스포츠학원' 시설에 관한 법·행정 규제 연구를 제시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 영세소상공인 증언 중 춤바댄스학원 사례의 상황과 원인을 신동찬(2015)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체육시설법의 구조가 운동, 종목의 형태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술 행위로서의 '춤'과 신체활동으로서의 '춤'에 대한 논란은 학계에서도 오랜 과제였다. '댄스스포츠학원'이 체육시설법상 '신고시설'과, '학원법'상의 무도학원의 적용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담당자의 각기 다른 잣대에 따라 불평등하게 집행되고 있는 행정상의 문제는 물론 법의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편법 등의 행위로 이어지는 폐단의 원인이 된다(신동찬, 2015). 물론 이번 2020년 4월 국회 개정에서 체육시설법 제 10조의 '신고시설'에 '체육교습업'이 추가되어 이 부분에서의 일정 부분 문제 해결의 여지는 미약하나마 마련되었다. 그러나 '댄스스포츠' 시설의 현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이번 코로나19의 춤바댄스 시설 사례에서 나타났듯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때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문화시설'로 행정 적용하는 사례도



있고, 이도 저도 아닌 서비스업으로 행정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체육시설법의 일부개정 문구 역시 일선 행정 현장에서의 법적 적용의 명확한 구분과 적용이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

김현일(2020)은 스키장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국유재산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24가지 법을 검토 분석한 결과 스포츠산업 진흥을 저해하고, 불합리한 다수의 법 조항을 발견하였다. 그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30여 년 전의 과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법·제도가 여전히 행정과 사법 현장에서 구속력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체육시설에 대한 시급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관련 법의 법적, 제도적, 행정 구조상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 여러 관련 법에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설 구분 조항(제10조에 해당함)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적 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였다.

강종진(2017)은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설 현황 파악에 있어, 소규모 신고 체육시설 등의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이는 체계적인 정보관리체계의 부실로 이어져 위험 요소, 취약성,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책 수립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위한 관련 법적 기준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탁구장, 줌바댄스학원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체육시설법상 시설의 구분·종류의 불분명함과 비현실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치 차원의 독립적 대안을 활용한 예도 있다. 청주시(2015)는 도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방안 연구에서 현 중앙정부 및 관련 국책 연구 기관 등

의 자료 분석을 통해 체육시설의 구분이 현실적 행정 적용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체육시설법의 제 10조에 명시된 민간체육시설은 물론 제 6조의 공공체육시설의 구분과 분류 마저 현실적 적용에 한계가 있어 시설 실태 파악을 위한 별도의 현실적 구분과 분류체계를 활용하였다. 창원시(2019)시 역시 청주시의 이러한 견해에 따랐으며, 창원시 체육시설 수급 적정성과 향후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청주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다음은 체육시설법 제 10조에 대해 체육시설법 관련 소송과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전문 변호사의 의견이다.

변호사 H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10조에서 체육시설업을 열거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업종에 제한을 두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자칫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발현될 체육시설 형태를 실정법이 따라갈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4. 체육시설법 제 10조의 개정 필요에 대한 답론

20세기 이후 국제사회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한 영역으로서 스포츠 활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인간의 스포츠 참여 권리의 보장을 '보편적 권리'로서 인정하였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인간 권리의 침해로 규정하였다(Veal, 2010). 이러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대하여, 대한민국 사회 역시, 국민의 스포츠 활동 보장에 관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

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코로나19 사태의 현장 사례, 선행 연구의 다양한 분쟁 사례 등을 통해 지금의 체육시설법이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가 심각한 상태임을 발견하였다.

체육시설법, 특히 제10조가 변해가는 스포츠 현장의 시대상이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 구분과 종류, 그리고 범위가 트렌드 변화나 국민의 신체활동 유형은 물론 신규 업종이나 변환 업종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서와 공무원들은 행정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나 행정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였음을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실태 파악에 있어서조차 체육시설로서 구분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행정 공백, 즉 행정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행정의 혼란과 사각지대는 사회적 갈등과 편법을 일으키는 악순환의 제도적 원인이 된다. 한편으로는 앞서 제시한 다양한 사례와 같이 국민의 생존과 연결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 차원에서 스포츠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시대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인 직업의 안정과 고용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포츠는 사회현상을 투영하고, 사회변화와 함께 호흡하는 것으로서 생활 스포츠, 프로스포츠, 미디어와 같은 상업적 영역은 물론 국민 건강, 성, 스포츠산업 육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필수 요건이 되는 체육시설의 영역도 정책적 측면에서 사회 요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Maguire, 2013). 과거에 머무른 구태의 법과 제도가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 긴급한 정책적 대응과 법적 개정을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상 반영과 적용의 유연성이 정책 속에 묻어나야 한다. 신체활동에 대한 개념 적용에 있어 제도 중심의 사고방식이 녹아 있는 '줌바댄스학원'의 사례나, 과거 사치성 행위로 인식되었던 '스키장'에 대한 제약, 그리고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e-sports 시설의 제외와 같은 법적 불합리성은 시급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체육시설법 제10조의 종목 중심 시설 구분과 종류에는 한계가 있다. 운동 종목 유형으로 시설을 등록, 신고, 자유 업종으로 구분하다 보니 종목의 유행이나 트렌드, 소멸과 생성, 사회상 반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일랜드 정부의 경우 체육시설 관리 정책 기본 방향의 시설 구분은 신체활동의 유형에 기초하며, 연령대별 요구와 인구 증감을 배경으로 한 신체활동 유형별 증감 예측 및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Government of Ireland,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변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정책 방향 결정에 있어 활동 유형만의 예측으로는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의 건축, 시설 설치, 운동 장비 등의 분야는 급속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OSMU 방식과 같은 다목적 기능의 수행이 소규모 체육시설에서도 가능해졌으며, 공간의 활용이 활동의 개념을 다양화, 극대화하는 추세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구분이 신체활동 유형뿐만 아니라, 시설 공간 개념까지 도입한 신개념의 구분과 종류 방식을 제안해본다. 또한, 이를 토대로 체육시설법 제 10조의 '등록', '신고', '자유' 등급 분류의 세밀함과 더불어 다양

한 단계 구성을 제안해본다. 이와 관련, 김헌일(2020)은 체육시설 관련 법의 법적, 제도적, 행정 구조상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 관련 법에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설 구분(제10조에 해당함)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적 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였다.

체육시설법 제10조와 그와 관련된 법 조항들의 개정에 앞서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원론적 요구가 있다. 그것은 행정편의의 공공서비스, 즉 행정서비스 공급자 중심이 아닌 행정서비스 소비자 중심의 제도로 변화와 이를 충족하는 법 개정 요구다. 정부 관료와 정책 입안자들은 스포츠 관련 사회적 문제 요인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고, 시민의 요구를 충족하며, 시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스포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끊임없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Bloyce & Smith, 2010). 입법기관의 법 개정 전반적인 과정에서 행정 관리편의보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미래 지향적인 시장 환경의 반영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구태의 질서, 예컨대 기존의 헤게모니를 사수하려는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민의 요구에 대한 부응과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진흥을 위한 노력으로써, 국가(입법, 사법, 행정의 3권 체계의 국가)는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혹은 민간 조직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리더십 발휘는 물론 이 모든 것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Bergsgard, Houlihan, Mangset, Nodland, and Rommetvedt, 2007).

## IV. 결론

본 연구는 그동안 스포츠 현장에서 제기되어왔던 법적 문제인 체육시설법 제 10조와 이 조항으로 인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체육시설법 제 10조의 다양한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체육시설법 제 10조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상, 스포츠 시장,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의 행정 편의적 제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행정 현장의 혼란과 이중적 잣대의 적용,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행정기관 사이의 갈등은 물론 시민 간 갈등과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사유재산의 침해 사례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한 편법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신체활동 급부상과 트렌드, 문화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로 인하여 제도가 스포츠와 사회발전은 물론 시장과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체육시설법 제10조를 근거로 체육시설 관련 다양한 법이 작동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체육시설법 제10조에 의해 파생되는 사회적 손실은 우리가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따라서 체육시설법 제10조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가는 국민의 신체활동 보장, 사유재산의 인정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체육시설법은 그 중심에 있다.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사회적 손실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시설법 제 10조는 현시점에서 긴급히 개정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얻은 다양한 사례 결과를 통해 개정 이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개정 방향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법 제 10조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태에 머무르고 있는 체육시설법 제 10조를 새로운 신체활동 형태나 인식변화 등 사회변화와 국민의 요구는 물론 향후 변화할 시대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연성이 녹아 있는 법문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구현해 낼 수 있는 공간 활용의 기술적 현실을 인식하고, 현재 특정 운동 종목 유형으로 구분·종류를 분류한 체육시설법 제10조를 기존의 종목 유형과 더불어 시설 공간 개념을 더하여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등록', '신고', '자유' 단계의 분류를 공간과 활동 형태에 맞추어 더욱 세분화하며, 동시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 개념 제공 여부를 가능할 수 있도록 더욱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 행정 공급자 중심의 법·제도가 아닌 국민과 행정 소비자 중심의 법·제도 마련이 개정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스포츠 현장 요구 수렴의 기회와 절차를 개정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참고문헌

강종진(2017).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경향신문(2020). **양천구탁구장 관련 확진자 17명·서울 수도권 집단감염 지속**. 2020.06.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61436001&code=940100#csidx77c66e6562da2feb7ed36dd86653aa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61436001&code=940100#csidx77c66e6562da2feb7ed36dd86653aa2)

기획재정부(2020). **제1차 위기관리대책위원회 개최**. 2020.03.18. 보도자료. 세종.

김헌일(2019). 스키장관련 법 문제제기 및 정책, 법 개선 제안.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4(5). 18-35.

김헌일(2020). 스포츠산업 정책을 위한 시장 예측 알고리즘 개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52. 71-81.

남기연, 김대회(20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력단련장업의 편의 시설 및 안전·위생관리 기준에 관한 법적 판단 -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도 2793 판결을 중심으로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1(4). 45-68.

뉴스스(2020). **정부 "8일부터 19일까지 불법 방관업체 집중점검**. 2020.06.07.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7\\_0001051002&clID=10201&plI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7_0001051002&clID=10201&plID=10200)

뉴스1(2020). **'코로나19' 덮친 헬스장 '폐업 먹튀' 주의보...피해자속출**. 2020.06.07. <https://www.news1.kr/articles/?3955749>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스포츠산업실태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 스포츠산업백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2023 스포츠산업중장기발전계획**.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2020). **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에 약 400억 추가지원**. 2020.05.28. 보도자료. 세종.
- 신동찬(2015). **댄스스포츠학원 관련 법·행정 규제의 모순에 관한 비판적 연구: 체육시설인가? 교육시설인가?**.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신호영(20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위헌성 연구 - 재산권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반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96. 81-113.
- 신호영, 정철화(2020).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영업양도 및 골프장 토지 경락 등의 조세효과 연구. **법학논총**. 37(1). 99-124.
- 연합뉴스(2020).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2020.04.30. <https://www.yna.co.kr/view/PYH20200430000100013?input=1196m>
- 연합뉴스(2020). **2월 천안증바위크숍에 대구서 3명참석. 코로나19유입통로였다**. 2020.03.06.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6084452063?input=1195m>
- 위기관리대책위원회(2020).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 III (관광, 영화, 통신, 방송)**. 2020.04.01. 관계부처 합동.
- 이경운(2016). **체육시설법상 회원모집계획 검토결과 통보의 법적 성격**. **법학연구**. 49. 333-360.
- 인천일보(2020). **인천 중구, 공공체육시설 폐쇄 무기한 연장**. 2020.06.16.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4178>
- 스포츠서울 (2020). **‘코로나19 여파 ‘ KBO, 결국 개막인 4월 중으로 잠정연기**. 2020.03.24.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892239>
- 중앙일보(2020). **마스크 안 써도 그만, 탁구장·방문판매업체 ‘방역 사각’ 비상**. 2020.06.09. <https://news.joins.com/article/23796826>
- 창원시(2019). **창원시 생활체육시설 수급 적정성 검토 연구**.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
- 청주시(2015). **청주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청주.
- 한국스키장경영협회(2020). **코로나 19발 2월 스키장 피해 파악 보고(비공개 내부자료)**. 서울.
- Advanced-Television(2020). *Analyst: Coronavirus a significant opportunity for eSports*. 2020.03.18. <https://advanced-television.com/2020/03/18/analyst-coronavirus-a-significant-opportunity-for-esports/>
- BBC(2020) *How the virus has impacted sporting events around the world*. 2020.06.12. <https://www.bbc.com/sport/51605235>.
- Bergsgard, N S, Houlihan, B, Mangset, P, Nodland, S.L, and Rommetvedt, H (2007). *Sport Policy: A Comparative Analysis of Stability and Change*. Oxford. Butterworth -Heinemann in Elsevier.
- Bloyce. D., & Smith, A. (2010). *Sport Policy and Development*. Newyork. Routledge.
- BroadcastPro(2020). *Esport media rights could surge due to coronavirus: Globaldata*. 2020.03.30. <https://www.broadcastprome.com/news/esports-media-rights-could-surge-due-to-coronavirus-globaldata/>
- CNBC(2020). *Coronavirus outbreak : Here'e What's Canceled in Sports*. 2020.03.12.

- <https://www.cnn.com/2020/03/12/the-sports-world-grinds-to-a-halt-amid-the-coronavirus-outbreak.html>
- CNN(2020). *More sports events postponed or Excluding fans amid Coronavirus outbreaks*. 2020.03.17. <https://edition.cnn.com/2020/03/17/us/us-sports-coronavirus-postponements-spt-trnd/index.html>
- Government of Ireland(2018). *National Sports Policy 2018-2027*. [www.dttas.gov.ie](http://www.dttas.gov.ie)
- KBS(2020). **정 총리, “종교·체육·유형시설 보름간 운영중단 강력 권고”**. 2020.03.2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7041&ref=A>
- Independent(2020). *Coronavirus crisis leaves Uefa ‘in shock’ as crucial talks aim to salvage football season*. 2020.01.16. <https://www.independent.co.uk/sport/football/europe-an/coronavirus-uefa-football-crisis-talks-games-a9403741.html>
- Maguire, J. (2013). *Reflections on Process Sociology and Sport*. Newyork. Routledge.
- MBC(2020). **남자프로농구, 코로나19로 시즌조기 종료** 2020.03.24. [https://imnews.imbc.com/news/2020/sports/article/5675719\\_32661.html](https://imnews.imbc.com/news/2020/sports/article/5675719_32661.html)
- Nielson Sports(2018). *Top Global Sports Industry Trends*. <https://nielsen.com/reports/commercial-trends-sports-2018/>
- PWC(2018). *Sports Industry: Lost in Transition?*. <https://www.pwc.com/en/insights/sports/sports-survey-2018.html>
- Santo, C. (2009). *Chapter 4. Economic Impact of Stadium, teams, and Events & Chapter 5. Cities, Stadium, and Subsidies: In Sport and Pubic Policy by Santo, C., & Midner G.C.S.*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Veal, A. J. (2010). *Leisure, Sport, Tourism, Politics, Policy and Planing*. Oxfordshire. CABI.
- WHO(2020). *Tindire of WHO’s response & Situation report*. 2020.07.21. 09:00.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
- WSJ(2020). *Sports Industry Reel from Coronavirus Fallout*. 2020.03.29. <https://www.wsj.com/articles/sports-industry-reels-from-coronavirus-fallout-11585517192>
- YTN(2020). **“또 폐쇄될라”...탁구장 집단감염에 실내 체육시설 '조마조마'**. 2020.06.06. [https://www.ytn.co.kr/\\_ln/0103\\_202006061846538800](https://www.ytn.co.kr/_ln/0103_202006061846538800)

논문투고일 : 2020년 7월 14일  
논문심사일 : 2020년 7월 22일  
게재확정일 : 2020년 8월 20일

## ABSTRACT

### COVID-19 pandemic and the Policy and the Law for Sports Facilities

Kim, Hun-II(Cheong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find the pending issue of the policy and the law for sports facilities, especially in COVID-19 pandemic. The research is mainly focus on 'The law of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No.10.'

The 'No.10.' is not reflect social culture, sports market, and the public clamor but it hangs onto the past administrative opportunism. 'No.10', the irrational law causing the administrative confusion, social conflict, unfairness in administration and market, and also the legal dispute. 'The law of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No.10.' is need revision to prevent the social losses and to develop Korean society and sports industry.

For this, the first, the government try to revision 'No.10.' It has contained social trend and public demands with changing attitude for sports. The second, it need to converging construction space concept with activity type based on develop technology and engineering. The third, it need to refined distinction of the classification with it include new type physical activity and service of sports market. Finally, it must be standing on the needs of consumer, not provider sides as like administrative officer or National Assembly in whole processes the revision of law 'No.10'.

**Key words** : Sport facilities law, Sports facilities policy, Sports policy